

대통령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신탁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5년 11월 25일

국무총리 이 해 찬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한 덕 수

○대통령령 제19137호

신탁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신탁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다음 각목의 1”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호나 목중 “경력이 있는 자”를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4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동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보험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자산운용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제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

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법령을 위반하거나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
제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특수관계자”를 “특수관계자인 주주”로 하며, 동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신탁업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본적정성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증권회사 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별표의 규정(제1호마목의 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3호를 제15호로 하며, 동항제7호 내지 제12호를 각각 제8호 내지 제13호로 하고, 동항에 제7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1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실물자산에의 운용

7. 다음 각 목의 자산(외국에서 발행 또는 유통되는 것으로서 외국 통화로 표시된 것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에의 운용
 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탁의 수익권
 나. 특정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계약상의 출자지분 또는 권리
 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3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조합계약에 의한 조합지분
 라.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 등 부동산의 사용에 관한 권리

14.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외화증권의 매입

제11조제2항중 “제1항제3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을 “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으로 한다.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중 “상임임원은 다음 각호의 1”을 “상임임원(신탁경영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신탁부문 담당 임원에 한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업자단체”를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업자단체, 「증권거래법」 제1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증권업협회 또는 「보험업법」 제1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로 한다.

별표 제1호다목중 “비율을 말한다.”를 “비율을 말하며, 이 경우 금융기관은 부채비율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로 하고, 제4호가목중 “신탁업”을 “신탁업(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5 이상을 보유하는 자회사를 통하여 이를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탁업법 시행령 개정이유

은행·증권회사 및 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이 신탁업을 겸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탁업의 인가요건 중 일부를 완화하거나 배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탁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신탁업의 자산운용대상에 외화표시자산 및 실물자산을 추가함으로써 종합재산관리 수단으로서의 신탁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기관에 대한 신탁업 겸영 인가요건의 완화(영 제2조의2 제5항 단서 신설)

(1) 주요출자자의 요건이 신규인가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어, 은행·증권회사 및 보험회사 등 기존 금융기관이 신탁업을 겸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부 요건을 적용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음.

(2)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본적정성 요건을 충족하는 기존 금융기관이 신탁업을 겸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주요출자자에 관한 요건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금융기관에 대한 신탁업 인가가 용이하게 됨으로써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업무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자산운용규제의 완화(영 제11조제1항제6호, 영제11조제1항제7호 및 제14호 신설)

(1) 신탁회사의 자산운용방법이 제한되어 있어 다양한 신탁상품을 개발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신탁자금의 운용방법에 외화표시자산·실물자산에의 운용등을 추가함.

(3) 신탁자금 운용방법이 확대되어 다양한 신탁상품의 개발

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고객에게 종합적인 자산관리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5년 11월 25일

국무총리 이 해 찬

국무위원
산업자원부 이 희 범
장 관

●대통령령 제19138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호가목중 “액화석유가스를 제외한다”를 “액화석유가스 및